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90호 2018. 10. 2(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52호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87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90호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 2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
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92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9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98호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3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 -	4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	5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01호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5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02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60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08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72
---------------------	---------------------	----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52호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를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의”를 “학생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계기관장”을 “관계 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참고서류”를 “참고 서류”로 한다.

제3조 중 “(별지 제3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부터 7일이내”를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구금고”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5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사항(제2조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설과	1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24조	
노인복지과	1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제에너지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규모 도정업에 관한 권한제외)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나. 청문 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양곡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1조	
	2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중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협의에 관한 사항	- 농지법시행령 제39조	
	3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44조	
	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권한	- 농지법 제38조	
기업지원과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2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나.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다.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라.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마.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바.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사. 정기검사 아. 수시검사 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차.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카.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타. 조사 파. 계량기 표시의 개선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2조제1항 - 같은 법 제33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 설 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2개구이상 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제외) 가. 도로점용허가 나. 도로예정지 점용허가 다. 접도구역관리 라. 도로부지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마.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바. 도로점용지의 원상복구 면제승인 사.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아.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에 한함) 자. 도로환경정비 차.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 도로법 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제66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50조 - 도로법 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2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한 시설물자의 사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3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중 차도·보도· 측도·배수로·길도랑 유지관리 나. 사도개설허가 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도로, 비포장도로, 긴급복구, 설해대책)	- 도로법 제31조 - 사도법 제4조 - 도로법 제50조	
	4	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 가. 폭 20M미만 도로의 하수도유지 및 공사관련 사항 나. 연면적 1,000㎡이하 건축허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물의 사용 및 유지와 공사에 관련한 사항	- 하수도법 제7조 및 제8조	
	5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나. 공공하수도의 감독	- 하수도법 제20조 - 같은 법 제37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 3 ””을 “별표 3”으로 한다.

제2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87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등학생중”을 “고등학생 중”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균 7등급 이내인 재학생. 다만, 평균등급은 각 과목의 석차등급에 단위 수를 곱하여 합산한 후, 해당 과목별 단위 수의 합계로 나눈 등급으로 할 것.

학교간 및 동별 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년간”을 “연간”으로, “15%”를 “15퍼센트”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학기개시후”를 “학기 개시 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시”를 “한꺼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을 “그 직에서 위촉 해제가 되었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장학금지급”을 “장학금 지급”으로, “구에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인천광역시 서구 장학기금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문화관광 체육과	1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 변경 다. 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6조	
	2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의 변경 다. 신고·등록증의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라. 행정조치(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제60조 - 같은 법 제61조, 제6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99조	
	3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허가 나. 신고·등록·허가 사항의 변경 다. 신고 및 등록·허가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허가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4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연장의 등록 나. 공연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폐쇄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5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화상영의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같은 조례 제21조 - 같은 조례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재무과	1	구유 잡종재산의 관리 가. 실태조사 나.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다. 미수액 채납관리 라. 기타전산입력 처리 등	- 지방재정법 제73조	
	2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18조	
노인복지과	1	장례식장의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자 등록현황 관리 나.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설치 등록 나. 경로당 변경, 휴·폐지 다. 경로당 운영지도	- 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3	장사등에 관한 다음사항 가.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나. 개인, 가족, 종중·문중을 대상으로 설치·관리하는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의 신고·허가 및 사후관리 다. 무연분묘의 개장 및 처리 라. 묘지이전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등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위생과	1.	<p>공중위생영업(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변경) 및 폐업</p> <p>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p> <p>다. 공중위생영업소지도단속</p> <p>라.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p> <p>- 같은 법 제3조의2</p> <p>-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9조의2</p> <p>-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p>	
	2	<p>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영업허가 등</p> <p>나. 영업 승계</p> <p>다. 출입·검사·수거 등</p> <p>라.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p> <p>마. 벌칙</p>	<p>- 식품위생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9조</p> <p>- 같은 법 제22조</p> <p>-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p> <p>-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102조까지</p>	
자원순환과	1	<p>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p> <p>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p>	<p>-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6조, 제45조, 제48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p> <p>- 같은 법 제39조</p> <p>- 같은 법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p> <p>- 그 밖에 폐기물 관리법에 관련된 규정</p>	
	2	<p>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신고</p> <p>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 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와 관련된 사항</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4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p> <p>- 같은 법 제34조</p> <p>- 같은 법 제61조,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p> <p>-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규정</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경제 에너지과	1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 농지법 제8조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 분통지서 발급	- 농지법 제10조제1항	
	3	농지원부 작성 및 등본발급	- 농지법 제51조,제52조	
	4	일반소유 상환초과농지 소유인정서 발급	- 농지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 규칙 제6조제1항	
	5	대리경작자의 지정	- 농지법 제19조제1항	
	6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 칙 제54조	
	7	농지검사 및 조사	- 농지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7조	
	8	농지 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제1항	
	9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전용 허가	- 농지법 제36조제1항	
기업지원과	1	공장입지 기준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9조	
	2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신설,증설,업종 변경,이전)승인 및 변경승인 나.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 신고 다.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라.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3조, 제20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의3 - 같은 법 제14조의3	
	3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 같은 법 제15조	
	4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부분등록 나. 건축물 등록 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5	공장이전의 확인	- 같은 법 제21조	
	6	기존공장폐쇄 확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7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설,증설 승인 및 변경승인 나. 완료(변경완료) 신고	- 같은 법 제28조의2 - 같은 법 제28조의2	
	8	공장설립대장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제10조제4항	
	9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취소 다. 공장의 등록취소	- 같은 법 제13조의5 - 같은 법 제14조의4 - 같은 법 제17조	
	10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 같은 법 제55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축과	1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포함)등 (항측에 의한 위반건축물 제외)	- 건축법 제79조, 제81조, 제82조	
	2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2, 제113조	
	3	동당 연면적 1,000㎡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4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사항변경 포함)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	
	5	가설건축물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및 관리	- 건축법 제20조	
	6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83조	
	7	건축(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에 관 한 다음의 권한 가. 착공신고의 수리 나.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법 제21조 - 건축법 제22조	
	8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 건축법 제36조	
	9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본발급	- 건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도시재생 경관과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라.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바.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사.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의 취소 아.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자. 허가·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같은 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0조의2	

[별표 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세무1과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자립지원과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노인복지과	1	매·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가정보육과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저소득한부모가정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일제조사 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변동사항 확인 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변동사항 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자원 순환과	1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권한 가. 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나.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신고		
	2	동 배치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3	이면도로 청소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	
	4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	-폐기물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63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에 관한조례제17조 내지제25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단체”라 함은”을 ““청소년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을 “전염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사용당일에”를 “사용하는 날에”로 하고, “당일”을 “그

날”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녹생성장”을 “녹색성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월”을 “그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90호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중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평생교육센터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과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 각 50퍼센트로 구성한다.

⑥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교육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선정
2.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와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심의·의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된다.

② 안전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이용자인 경우

2.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속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다음에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삽입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19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벤처기업부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92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징수관 :”을 “징수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임징수관 :”을 “분임징수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무관 :”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재무관 :”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채권관리관 :”을 “채권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 :”을 “채무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출원 :”을

“지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입금출납원 :”을 “수입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현금출납원 :”을 “현금출납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물품출납원 :”을 “물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

경 친화적 자동차

제5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제5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 특별회계”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5조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중 “회계의 운영”을 “특별회계의 운영”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96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시설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영화)	행사	
가. 대강당	오전	30,000	45,000	○ 오전 (09:00~13:00) ○ 오후 (13:00~18:00) 야간 (18:00~22:00) ○ 공연 및 행사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토요일 오후 및 야간,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1시간미만은 20%, 2시간미만은 50%, 2시간이상은 다음회의 100%를 추가징수 ○ 익일의 공연이나 행사준비를 위하여 22: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함
	오후	45,000	65,000	
	야간	70,000	90,000	
나. 세미나실	1회	30,000		
다. 체육관	1시간	2층	<u>6,000</u>	
		3층	<u>4,000</u>	
라. <u>다목적 체육관</u>	<u>1시간</u>	<u>6,000</u>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지원
10.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다문화 가족 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98호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예우)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내 보훈관련 행사, 문화·축제행사 등에 우선하여 초청한다.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협조)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서구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서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구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종이화폐와 전자화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구청장으로부터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5. “지원위탁단체”란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가맹점”이란 지역화폐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8. “인센티브”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 지원위탁단체, 가맹점, 사용자에게 대한 보상을 말한다.

제2장 서구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 판매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액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제작 및 판매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보전 등 비용
2. 지역화폐 위탁 판매에 따른 취급수수료 지급

3. 지역화폐 판매에 따른 제비용(지역화폐 판매 수탁기관 부담의 카드사용 수수료 등)
4. 가맹점에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5. 지역화폐 사용자(구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6.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적립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제30조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가 겸직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기금예산 및 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기금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존치기간) 기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서구 지역화폐 관리 및 운영

제17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 ① 지역화폐는 구청장이 발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류형 지역화폐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등 협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액면 금액은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지류형
2. 전자식

② 지류형의 경우,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9조(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지류형 지역화폐는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서구청(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서구청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타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유흥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용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지역화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화폐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21조제1항 및 제22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2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류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를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류형 지역화폐 액면 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지역화폐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지류형 지역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지류형 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류형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에 지류형 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지류형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류형 지역화폐는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지류형 지역화폐를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지류형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의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협약서,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24조(지원위탁단체 준수사항)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원위탁단체는 지역화폐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위탁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방안을 찾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위탁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매해 지원위탁단체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위탁단체를 재위촉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지류형 지역화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26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지류형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제27조(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 방법) ① 지역화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일시불)와 체크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 할인가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가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류형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지원위탁단체에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지급률 등은 구청장과 판매대행점 및 지원위탁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⑤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2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다.

⑥ 지역화폐 할인가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판매 수수료는 기금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28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판매대행점, 지원위탁단체, 가맹점 등에 기금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매년 1회 판매대행점 및 지원위탁단체를 선발하여 기금의 1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2. 매년 1회 가맹점을 선발하여 기금의 1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3. 지역화폐 판매대행점, 지원위탁단체, 가맹점에 대하여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행사·공사·용역·물품 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30조(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판매점대행점 및 지원위탁단체 지도·감독 결과 주요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1명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복지분야 전문가 및 유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이다.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

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
2. 구의 청년지원 등 관련부서 국장 2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⑧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청년참여단)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참여단(이하 “청년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모집하여 청년참여단 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 ② 청년참여단은 단장 1명과 남·여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청년참여단은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청년참여단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청년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 ⑦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 나.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마.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회의, 포럼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구청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의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01호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65세 이상의 주민 중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3.“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4.“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이하 “생활관리사”라 한다)”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무연고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구의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고독사 위험자에게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의 지원
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의 적극 발굴 연계
5. 고독사 위험자가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02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

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인천광역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17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환경국장, 안전총괄실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서부경찰서장

나. 인천서부소방서장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바.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중 2분의 1 이상 또는 참석위원 5명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

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안전 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 ③ 구청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비상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 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 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603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아동친화정책관”을 “미래기획단,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408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에서 시행하는 「청마로34번길 도로개설공사(소3-60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6-18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3-601호선)
 - 명칭 : 청마로 34번길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규모 : B=6m, L=147m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청마로34번길 도로개설공사(소3-601호선)	2016.6.~ 2018.12.	인천 서구 당하동 956-18번지 일원	L= 147m B= 6m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사업의 근거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30호(2017.3.20.)
- 실시계획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145호(2017.11.13.)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8-48호(2018.04.02.)

3. 수용재결 신청대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 “별첨”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8. 10. 2. ~ 2018. 10. 18. (16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560-4485)
6. 공고내용
 - 가. 인천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청마로34번길 도로개설공사(소3-60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 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 지 조 서

사업명 : 청마로34번길 도로개설공사(소3-601호선)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1	서구 당하동	956-18	임	119	인천 서구 검단로 884(블로동)	안동진			
2	서구 당하동	956-13	임	72	인천 서구 검단로 884(블로동)	안동진			
3	서구 당하동	956-17	임	204	인천 서구 검단로 884(블로동)	안동진			
	계			1,597.42					

